

부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신 · 구 조문 대비표^(2026.9.)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공모부서는 설계공모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①~⑤ (생략)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공모부서는 설계공모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의2 제3항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준용한다. ①~⑤ (현행과 같음)	□ 운영위원회 자격 추가 (국토부 운영지침 개정 반영)
제7조【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③ (생략) ④ 공모안에 대한 기술(사전)검토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 1~2 (생략) ⑤ 심사위원 명단 추천 ⑥ 그 밖에 사업진행 및 설계공모 추진과 관련하여 공모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의2의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겸하며, 공모안에 대한 기술(사전)검토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 1~2 (현행과 같음) <삭제> ⑤ 그 밖에 사업진행 및 설계공모 추진과 관련하여 공모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 운영위원회 역할 근거 마련 (국토부 운영지침 개정 반영)
제9조【시행공고】 발주기관은 운영지침 제5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건축 설계공모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및 세움터에 게재한다. 단, 구·군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설계공모를 부산광역시에 의뢰한 경우에는 의뢰기관에서 시행 공고한다.	제9조【시행공고】 발주기관은 운영지침 제5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건축 설계공모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에 게재한다. 단, 구·군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설계공모를 부산광역시에 의뢰한 경우에는 의뢰기관에서 시행 공고한다.	□ 공고 장소 변경 (국토부 운영지침 개정 반영)
제16조【심사위원회 구성】 공모부서는 설계공모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6조【심사위원회 구성】 공모부서는 설계공모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5.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 기관이 인정한 사람 ⑥~⑦ (생략) ⑧ 공모부서는 세움터 등 설계공모 사이트를 통해 심사위원별 설계공모 심사횟수(심사참여와 여부와 상관없이 위촉사실 기준)를 확인하고, 심사위원 위촉 시 해당 심사위원에게 서면확인서를 제출받고, 심사 당일 서면확인서에 본인 확인(서명)토록 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제7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우리시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고, 심사일 이후에 위반사실을 안 경우 심사위원이 제7항 위반이더라도 해당 공모의 심사결과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⑨~⑪ (생략) ⑫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3일 전까지 그 근거자료를 공모부서에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⑬~⑯ (생략)	5. 삭제 ⑥~⑦ (현행과 같음) ⑧ 공모부서는 정보체계를 통해 심사위원별 설계공모 심사횟수(심사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위촉사실 기준)를 확인하고, 심사위원 위촉 시 해당 심사위원에게 서면확인서를 제출 받고, 심사 당일 서면확인서에 본인 확인(서명)토록 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제7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우리시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고, 심사일 이후에 위반사실을 안 경우 심사위원이 제7항 위반이더라도 해당 공모의 심사결과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⑨~⑪ (현행과 같음) ⑫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근거자료를 공모부서에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⑬~⑯ (현행과 같음)	□ 심사위원 관리 일원화 (국토부 운영지침 개정 반영) □ 기피신청 기한 변경 (국토부 운영지침 개정 반영)
제20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① 공모부서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 및 세움터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5 (생략) ② (생략)	제20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① 공모부서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 및 정보체계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심사결과 공개 장소 변경 (국토부 운영지침 개정 반영)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제24조【건축상 수상자에 대한 지명공모 특례】 발주기관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지명공모를 실시하는 경우(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설계용역) 「부산광역시 건축 서비스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진건축가상을 수상한 자에게 지명공모의 응모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지명공모 특례 신설 (건축정책과 요청 반영)
부칙<2020.6.12.>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17.>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18.>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1.>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기준 시행전에 공모공고를 하고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3.2.1.>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5.15.>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기준 시행 전에 공모 공고를 하고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	부칙<2020.6.12.>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17.>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18.>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1.>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기준 시행전에 공모공고를 하고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3.2.1.>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5.15.>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기준 시행 전에 공모 공고를 하고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	

현행	개정(안)	비고
정에 따른다. 다만 제5조 제3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운영기준 시행 전에 건축설계공모를 진행 중인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5. 2. 7.>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에 따른다. 다만 제5조 제3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운영기준 시행 전에 건축설계공모를 진행 중인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5. 2. 7.>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6. 7. 1.>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기준 시행 전에 공모 공고를 하고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6. 9. 1.>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전 제7조제5항(심사위원 명단 추천)을 삭제하는 규정과 제16조제1항, 제16조제5항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어의 적용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9조, 제16조제8항, 제20조제1항의 “정보체계”를 “세움터”로 본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건축상 수상자에 대한 지명공모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24조 규정은 2026년 신진건축가상을 수상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